

제5차 산업경제위원회
2009.12.16 (수 16:00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
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민경환 의원 외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9년 12월 8일
- 회부일자 : 2009년 12월 9일

3. 제안 이유

-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설치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의 사업비 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,
-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사업비 지원 한도액의 증액(안 제7조)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의 정비 등(안 제2조)
- 현실에 맞도록 조문 정비 등(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10조, 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설치된 농어촌개발기금의 사업비 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- 다만,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.